

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「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」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일
경기도지사

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[일부개정 재공고]

□ 적용대상 및 방법

○ 적용대상

- ① 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」 제14조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
- ②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

○ 적용방법 : 건축물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, 분류별로 차등 적용

분류	대상 건축물		비고
	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	②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	
①	○ 연면적 합계 10만㎡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	-	
②	○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인 건축물	○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	
③	○ 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건축물	○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	
④	○ 연면적 합계 3,000㎡미만인 건축물	-	

☐ 설계기준 (친환경 부문 + 에너지 부문 + 신재생에너지 부문)

○ 친환경 부문

구 분	세부내용	대상 건축물	법적 기준	경기도 설계기준안	비고
친환경 부문	녹색건축 인증 취득	①	자율	우수(그린 2등급) 이상	
		②	자율	우량(그린 3등급) 이상	
		③	자율	일반(그린 4등급) 이상	

○ 에너지 부문 (에너지 성능 부문 + 에너지관리 부문)

- 에너지 성능 부문 중 ‘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’ 은 ‘①’ 과 ‘②+③’ 중 선택,
‘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’ 은 ‘①’ 과 ‘③’ 중 선택

구 분		세부내용			대상 건축물	법적 기준	경기도 설계기준안	비고 (관련기준 등)
에너지 성능 부문 선택 형	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	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취득			①	자율	5등급 이상	
					②	자율	5등급 이상	
					③	자율	5등급 이상	
	② 에너지 성능지표	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취득			①	65점	80점 이상	
					②	65점	76점 이상	
					③	65점	72점 이상	
					④	65점	68점 이상	
	③ 에너지 절감기술	에너지 성능 지표 (EPI) 적용	건축 부문	1~3	① ~ ④	자율	0.8점 이상	외벽,지붕, 최하층바닥 평균열관류율
				5	① ~ ④	자율	0.8점 이상	기밀성 창 및 문 설치
			기계 부문	1~2	① ~ ③	자율	0.8점 이상 (개별난방, 기타 난방 냉방은 1점 이상)	냉난방열원설비효율
6				① ~ ② 중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	자율	적용(중앙식) / 0.6점 이상(개별식)	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(중앙식 및 개별식 공조장식 모두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% 이상 적용 시 인정)	
에너지 관리 부문	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			①	자율	설치 (별첨 참조)	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[별표1의2] 준수	
	스마트계량기 (에너지모니터링장치)			②~③	자율	설치	녹색건축 인증기준(운영 세칙)의 산출기준 4급 수준	
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‘에너지관리 부문’ 적용 제외

○ 신재생에너지 부문

구 분	세부내용	대상 건축물	법적 기준	경기도 설계기준안	비고 (관련기준 등)
신·재생 에너지	신·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율	2 중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	자율	1% 이상	녹색건축 인증기준(운영세칙)의 산출기준 ¹⁾ 적용
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‘신재생에너지 부문’ 적용 제외

□ 시행일 :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

※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·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최종 인·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,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1)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 = [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(난방용량+냉방용량+전기용량+급탕용량) / 전체설비용량(난방+냉방+전기+급탕)의 합] × 100

별첨1. 녹색건축물 인센티브

○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제15조, 영 제11조

-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(용적률, 높이) 최대완화비율

완화조건	최대완화비율
녹색건축 최우수 등급	6%
녹색건축 우수 등급	3%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(용적률, 높이) 최대완화비율

완화조건	최대완화비율
+등급(에너지자립률 120% 이상), 1등급(에너지자립률 100%이상)	15%
2등급(에너지자립률 80%이상 ~ 100%미만인 건축물)	14%
3등급(에너지자립률 60%이상 ~ 80%미만인 건축물)	13%
4등급(에너지자립률 40%이상 ~ 60%미만인 건축물)	12%
5등급(에너지자립률 20%이상 ~ 40%미만인 건축물)	11%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7조의2, 영 제24조

- 신축(증개축 포함)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

구분	감면조건	최대감면비율
녹색건축 인증	녹색건축 최우수 등급	10%
	녹색건축 우수 등급	5%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	제로에너지건축물 +등급~3등급	20%
	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	18%
	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	15%

※ 위 인센티브는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

별첨2. 에너지 성능지표

평가내용				배점					
				1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
건 축 부 문	1.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(W/m²K) (창 및 문을 포함)	비주거	중부1	0.380미만	0.380~ 0.430미만	0.430~ 0.480미만	0.480~ 0.530미만	0.530~ 0.580미만	
			중부2	0.490미만	0.490~ 0.560미만	0.560~ 0.620미만	0.620~ 0.680미만	0.680~ 0.740미만	
		주거	중부1	0.300미만	0.300~ 0.340미만	0.340~ 0.380미만	0.380~ 0.410미만	0.410~ 0.450미만	
			중부2	0.340미만	0.340~ 0.380미만	0.380~ 0.420미만	0.420~ 0.460미만	0.460~ 0.500미만	
	2.지붕의 평균 열관류율(W/m²K) (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)		중부1	0.090미만	0.090~ 0.100미만	0.100~ 0.110미만	0.110~ 0.130미만	0.130~ 0.150미만	
			중부2	0.090미만	0.090~ 0.100미만	0.100~ 0.110미만	0.110~ 0.130미만	0.130~ 0.150미만	
	3.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(W/m²K)		중부1	0.100미만	0.100~ 0.110미만	0.110~ 0.130미만	0.130~ 0.150미만	0.150~ 0.180미만	
			중부2	0.120미만	0.120~ 0.130미만	0.130~ 0.150미만	0.150~ 0.170미만	0.170~ 0.210미만	
	5.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(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(m³/hm²))				1등급 (1m³/hm² 미만)	2등급 (1~2m³/hm² 미만)	3등급 (2~3m³/hm² 미만)	4등급 (3~4m³/hm² 미만)	5등급 (4~5m³/hm² 미만)
	1.난방 설비 (효율%)	기름 보일러			93이상	90~ 93미만	87~ 90미만	84~ 87미만	84미만
가스 보일러		중앙난방방식		90이상	86~ 90미만	84~ 86미만	82~ 84미만	82미만	
		개별난방방식		1등급 제품	-	-	-	그 외 또는 미설치	
기타 난방설비			고효율 인증제품, (신재생 인증제품)				그 외 또는 미설치		

평가내용			배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1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계 부 문	2.냉방 설비	압축식냉동기(성적계수, COP)		5.18 이상	4.51~ 5.18미만	3.96~ 4.51미만	3.52~ 3.96미만	3.52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흡수식 (성적계수, COP)	① 1중효용	0.75 이상	0.73~ 0.75미만	0.7~ 0.73미만	0.65~ 0.7미만	0.65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② 2중효용	1.2 이상	1.1~ 1.2미만	1.0~ 1.1미만	0.9~ 1.0미만	0.9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③ 3중효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④ 냉온수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 냉방설비		고효율인증제품, (신재생인증제품)				그 외 또는 미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.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		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배점</th><th>1점</th><th>0.9점</th><th>0.8점</th><th>0.7점</th><th>0.6점</th></tr><tr><th colspan="2">공조기부착형</th><td colspan="6">설치여부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개별 장치</td><td rowspan="2">전열 교환기</td><td>난방</td><td>74 ↑</td><td>73 ↑</td><td>72 ↑</td><td>71 ↑</td><td>70 ↑</td></tr><tr><td>냉방</td><td>57 ↑</td><td>54 ↑</td><td>51 ↑</td><td>48 ↑</td><td>45 ↑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현열 교환기</td><td>난방</td><td>88 ↑</td><td>86 ↑</td><td>84 ↑</td><td>82 ↑</td><td>80 ↑</td></tr><tr><td>냉방</td><td>72 ↑</td><td>69 ↑</td><td>66 ↑</td><td>63 ↑</td><td>60 ↑</td></tr></table>						구분		배점	1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공조기부착형		설치여부						개별 장치	전열 교환기	난방	74 ↑	73 ↑	72 ↑	71 ↑	70 ↑	냉방	57 ↑	54 ↑	51 ↑	48 ↑	45 ↑	현열 교환기	난방	88 ↑	86 ↑	84 ↑	82 ↑	80 ↑	냉방	72 ↑	69 ↑	66 ↑	63 ↑
구분				배점	1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조기부착형				설치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별 장치				전열 교환기	난방	74 ↑	73 ↑	72 ↑	71 ↑	70 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냉방	57 ↑	54 ↑	51 ↑	48 ↑	45 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현열 교환기	난방	88 ↑	86 ↑	84 ↑	82 ↑	80 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냉방	72 ↑	69 ↑	66 ↑	63 ↑	60 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공조기 부착형은 설치여부 확인, 개별장치는 표기된 최저 성능기준 이상 충족 (단, 각 방식별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% 이상 적용 시 인정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위 성능지표는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 등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.

※ ‘중부1’ 및 ‘중부2’ 구분(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)

- 1) 중부1지역 : 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
- 2) 중부2지역 :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

별첨3.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설치 기준

항 목		설치 기준
1	일반사항	·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
2	시스템 설치	·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
3	데이터 수집 및 표시	· 대상건물에서 생산·저장·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(전기/연료/열 등)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
4	정보감시	· 에너지 손실, 비용 상승, 쾌적성 저하,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
5	데이터 조회	· 일간, 주간, 월간,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
6	에너지소비현황 분석	·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
7	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	·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%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
8	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	· 온도,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
9	에너지 소비 예측	·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
10	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	·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
11	제어시스템 연동	·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
12	종합 유지관리	·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
13	시스템 확장성	·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

※ 1,2,3,5,6,12번 항목 필수 적용(단, 주거용 및 1만㎡미만 비주거는 6번 항목은 필수 제외)
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[별표1의2]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기준 준용,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.

별첨4. 스마트계량기(에너지 모니터링 장치) 설치기준

- 모든 세대내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인정함.
- 전력, 가스, 지역냉난방, 유류 등 사용 에너지원의 에너지 소비량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.
- 세대에 설치되는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는 월패드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.

※ 위 기준은 「녹색건축 인증기준(운영세칙)」 등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.

별첨5.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 산출기준

-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(%)

$$= \frac{\text{신·재생에너지 (난방용량 + 냉방용량 + 전기용량 + 급탕용량)}}{\text{전체 설비용량(난방 + 냉방 + 전기 + 급탕)의 합}} \times 100$$

※ 위 기준은 「녹색건축 인증기준(운영세칙)」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.

별첨6.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(제출양식)

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

○ 사업 개요

사업명 또는 건물명	000 신축공사									
건 축 주	00(주) 대표이사 000									
대지위치	00시 00구 00로 00									
건축면적	000.00(㎡)		연 면 적		000.00(㎡)		냉난방면적		000.00(㎡)	
건물규모	지 상	00층		지 하	0층		최고높이		000(m)	
용 도	00 시설						건물동수		00(동)	
용도별면적	000시설 : 000.00㎡ , 000시설 : 000.00㎡									
승 강 기	계	승 용	비상용	승강기 용도별 ※()는 환산대수						
법정대수				계	승용	승용+비상용 +장애인용	승용+비상용+ 장애인용+화물용		승용+ 화물용	
설계대수										
추진경위	- 2026.00.00. :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									

○ 신청 구분

구 분		적 용 여 부 (■ 표시)			
적용 대상	구분	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		☐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	
	분류	☐ 1	☐ 2	☐ 3	☐ 4
성 능	친환경	☐ 녹색건축인증			
	에너지	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☐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☐ 에너지절감기술			
		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☐ 스마트계량기			
	신재생 에너지	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			
인센티브/완화		☐ 미적용	☐ 용적률	☐ 높이	

○ 성능 적용 수준

항 목					적용 수준		근거
					적용기준	설계내용	
친환경 건축	녹색건축인증						
에너지 성능	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(등급)						
	에너지성능지표 점수 (취득점수)						
	절감 기술	외피 평균 단열성능	외벽	(배점)			
			지붕	(배점)			
			바닥	(배점)			
		기밀성능	창 및 문	(배점)			
		냉·난방 열원설비	난방	(배점)			
			냉방	(배점)			
		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(중앙식 공조방식 또는 개별식 공조방식 중 선택 외기 도입 풍량 60% 이상 적용)			(채택/ 중앙식) (배점/ 개별식)		
에너지관리		에너지관리시스템 (BEMS)					
		스마트 계량기 (에너지 모니터링 장치)					

항목	분야별 설치비율		적용 수준		근거
			적용기준	설계내용	
신재생	전체 설비용량		—		
	신·재생 에너지	난방용량	—		
		냉방용량	—		
		전기용량	—		
		급탕용량	—		
	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(%)				

○ 인센티브/완화 적용 수준

항 목		적용 수준		
		적용기준	완화비율	설계내용
인센티브	용적률			
	높이			

※ ‘적용기준’은 완화적용 전 기준 작성, ‘설계내용’은 완화적용 후 내용 작성

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.				
년 월 일				
구 분	건축 분야		설비 분야	전기 분야
건 축 주	0000(주)	대표 0 0 0 (인)	담당자 ☎	031-0000-0000
설 계 자	(주)00사사무소		000사무소	(주)00종합기술
	대표 0 0 0 (인)		대표 0 0 0 (인)	대표 0 0 0 (인)

별첨7.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이행 확인서(제출양식)

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이행 확인서

○ 사업 개요

사업명 또는 건물명	000 신축공사									
건 축 주	00(주) 대표이사 000									
대지위치	00시 00구 00로 00									
건축면적	000.00(㎡)		연 면 적		000.00(㎡)		냉난방면적		000.00(㎡)	
건물규모	지 상	00층		지 하	0층		최고높이		000(m)	
용 도	00 시설						건물동수		00(동)	
용도별면적	000시설 : 000.00㎡ , 000시설 : 000.00㎡									
승 강 기	계	승 용	비상용	승강기 용도별 ※ ()는 환산대수						
법정대수				계	승용	승용+비상용 +장애인용	승용+비상용+ 장애인용+화물용		승용+ 화물용	
설계대수										
추진경위	- 2026.00.00. :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									

○ 건축물 대상 구분

구 분	분 류 (□ 박스에 체크)
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	☐ ① 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
	☐ ②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인 건축물
	☐ ③ 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건축물
	☐ ④ 연면적 합계 3000㎡ 미만인 건축물
사업계획 승인대상 (공동주택)	☐ ②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
	☐ ③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

○ 성능 적용 수준

항 목			적용 수준		이행여부	근거	
			적용기준(대상건물분류)	설계내용			
친환경 건축	녹색건축인증		1~3등급 (①~③)		☐ 이행 ☐ 미이행		
에너지 성능	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(등급)		5등급 이상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	
	에너지성능지표 점수 (취득점수)		80~68점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	
	절감 기술	외피 평균 단열성능	외벽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	지붕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	바닥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기밀성능	창·문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④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냉·난방 열원설비	난방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③) (개별, 기타 난방은 1점 이상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	냉방 (배점)	0.8점 이상 (①~③) (기타는 1점 이상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(배점) (①~② 중 비주거)		적용 (중앙식)		☐ 이행 ☐ 미이행	
				0.6점 이상 (개별식)		☐ 이행 ☐ 미이행	
에너지 관리	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		설치 ①		☐ 이행 ☐ 미이행		
	스마트 계량기 (에너지 모니터링 장치)		설치 ②, ③		☐ 이행 ☐ 미이행		

항목	분야별 설치비율	적용 수준		근거
		적용기준 (대상건물분류)	설계내용	
신재생	전체 설비용량 (난방+냉방+전기+급탕)			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(난방+냉방+전기+급탕)			
	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(%)	1% 이상 (② 중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)		

○ 종합판단

구 분	결 과
설계기준 이행 여부	☐ 적합 ☐ 부적합

위와 같이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함.

년 월 일

구 분	확 인 자
건 축 주	0000(주) 대표 0 0 0 (인) 연락처 ☎ 031-0000-0000
감 리 자	(주)00사사무소 연락처 ☎ 031-0000-0000
	대표 0 0 0 (인)